구분 면제･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･감면의 방법 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104의24) - 내국법인이 국외(개성공업지구 포함)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(수도권 밖)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① 완전복귀 -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개 과세연도 →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개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 ② 부분복귀 - (비수도권) 5년간 100% 2년간 50% - (수도권\* ) 3년간 100% 2년간 50% \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⑱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121의8) -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 산업･정보통신산업, 정보통신 서비스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-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3년 → 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 ⑲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121의9) ㉠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소득 ㉡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㉠에 대한 감면 -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→ 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 ㉡에 대한 감면 - ㉠의 1/2를 각각 감면 ⑳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121의17) ㉠ 기업도시개발구역(지역개발사업 구역, 지역활성화지역, 해양박람회 특구)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소득 ㉡ 기업도시개발사업(지역개발사업 구역, 지역활성화지역, 해양박람회 특구)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㉠에 대한 감면 -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→ 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 ㉡에 대한 감면 - ㉠의 1/2를 각각 감면 ㉑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121의20) -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･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-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3년 → 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